

군산시 공무원증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군산시장 권한대행

이 116 수



2014년 4월 1일

군산시 훈령 제311호

### 군산시 공무원증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과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증의 규격·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발급범위) 이 규정에 의거 공무원증(신분증을 포함한다. 이하 “공무원증”이라 한다)의 발급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1. 군산시 소속 공무원 : 공무원증
- 2. 청원경찰, 무기계약근로자 : 신분증

제3조(공무원증의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 등) ①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, 공무원증의 제식,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.

- 1. 공무원증의 규격 : 가로 54밀리미터, 세로 85.6밀리미터
- 2. 공무원증 앞면에 기재할 사항 : 나라문장, 사진, 성명 및 소속기관
- 3. 공무원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: 발급번호, 소속기관, 직위/직급, 성명, 발급일, 발급기관장의 명의로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.

다만, 직위/직급의 경우 공무원의 직위/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.

②공무원증의 집적회로(IC)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③공무원증의 집적회로(IC)칩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,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무원증의 발급권자) 공무원증은 군산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발급한다.

제5조(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) ①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, 공무집행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②공무원은 소속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(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). 다만, 제복을 입은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지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.

1. 전시, 사변,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때
2.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한 때

제6조(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) ①시장은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(이하 “대장”이라 한다)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, 대장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, 동일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

③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④공무원증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사진변경, 분실 및 훼손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

있다.

⑤시장은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 기재사항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⑥시장은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무원증의 반납 등) ①공무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,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때에는 공무원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할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1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

2.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

③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무원증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「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7조(신분증 등)신분증의 규격·제식 및 발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군산시 공무원증 규정」을 준용한다.

별지 제11호 서식을 삭제한다.



[별지 제2호서식]

###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

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	처리기간
신청인 인적사항	소속	직위(직급)	
	성명(한글)	주민등록번호	
	혈액형	전화번호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동의 안 함

신청사유	[ ] 분실 [ ] 훼손 [ ] 기타 ( 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분실사유	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.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붙임	사진 1장
----	-------

「군산시 공무원증 규정」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 명 (서명 또는

인)
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

부서장 성 명 (서명 또는

인)

군산시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## 군산시 공고 제2014 - 484호

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4년 3월 24일

군 산 시 장



###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 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사유

- 「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」에서 규정한 「자체평가위원회 (이하 ‘위원회’ 라 함)」를 운영함에 따라
-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자체평가 분과위원회(이하 ‘분과위원회’ 라 함)」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

#### 2. 주요내용

- 분과위원회 (안 제15조의 2)
  - ▶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
  - ▶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
  - ▶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으로 봄
  - ▶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·의결 가능

### 3. 의견제출

개정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4월 14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감사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우) 573-703 군산시 시청로 17 (조촌동, 군산시청)  
군산시청 감사담당관

(전화 : 454-2132, FAX : 454-2109, 전자우편 : cbj3565@korea.kr)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직접방문 등

라.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심사평가계(전화 454-213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군산시 규칙 제 호

##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**제15조의2(분과위원회)** ①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에 따라 자체평가 분과위원회(이하 ‘분과 위원회’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③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.

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#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이전에 구성·운영되고 있는 분과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·운영된 것으로 본다.

# 입법예고 규칙안 검토 의견서

□ 규칙명 :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 칙 안	검 토 의 견		사 유	비 고
	찬성	반대		
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 규칙안				

※ 조문별 사용 가능

군산시 고시 제2014-28호

#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

「주택법」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3. 18.

## 군 산 시 장

- 1. 사업명 : 문화동 셀브르타운 신축공사
- 2. 사업주체
  - 가. 회사명/대표 : (주)종수가 / 대표 : 오인권
  - 나. 주소 :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182, 운정빌딩 4층
- 3. 사업내용
  - 가. 사업위치 : 군산시 문화동 935
  - 나. 대지면적 : 998.5m<sup>2</sup>
  - 다. 건축면적 : 384.8m<sup>2</sup>
  - 라. 연 면 적 : 2,386.53m<sup>2</sup>
  - 마. 건축규모 : 아파트1동 8층, 28세대
    - 84.2545형(전용면적 : 59.7202m<sup>2</sup>) : 21세대
    - 86.6950형(전용면적 : 61.4500m<sup>2</sup>) : 7세대
  - 바. 구조 : 철근콘크리트 구조
  - 사. 사업비 : 3,700,000천원
  - 아. 사업기간 : 2013. 05월 ~ 2014. 03월
- 4. 설계도서 : 승인설계도서와 같음

## 5. 사업계획 변경 내용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대지면적	994.7m <sup>2</sup>	998.5m <sup>2</sup>	
대지위치	문화동 916-6,7,13	문화동 935	
층별(2층~8층) 바닥면적	331.25m <sup>2</sup>	333.5m <sup>2</sup>	
전체 연면적	2,370.78m <sup>2</sup>	2,386.53m <sup>2</sup>	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(건축과 ☎ 063-454-3713)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군산시 고시 제2014 - 29호

## 군산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군산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 결정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군 산 시 장

2014년 3월 21일

### 1. 군산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 위 치	면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5	연구시설	옥구읍 수산리 635일원	-	증)424,242	424,242	금회

2. 군산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: 실음생략. 끝.

군산시 고시 제2014 - 30호

### 군산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군산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 결정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군 산 시 장  
2014년 3월 21일

#### 1. 군산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 위 치	면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3	연구시설 나포면 나포리 산21-18번지 일원		증)99,761	99,761	금회	

2. 군산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: 실음생략. 끝.

군산시 고시 제2014 - 31 호

##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고시

「주택법」 제16조,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03. 21.

### 군 산 시 장

1. 사업명 :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

2. 사업주체 (변경없음)

가. 지역주택조합

1) 명 칭 : 군산2차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

2) 대표자 : 전 윤 권

3) 주 소 : 군산시 수송동 852-2번지, 청담빌딩 4층

나. 공동사업주체

1) 회사명칭 : 현대엠코주식회사

2) 대 표 자 : 손 효 원

3) 주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

3. 사업내용 (변경없음)

가. 사업위치 :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7번지의 34필지

나. 주택구분 : 민영주택

나. 대지면적 : 20,480.00m<sup>2</sup>

다. 건축면적 : 3,311.90m<sup>2</sup>

라. 연 면 적 : 65,840.33m<sup>2</sup>

마. 건축규모 : 아파트 4동 24~26층, 449세대

- 전용 84.9838m<sup>2</sup> 403세대

- 전용 84.9848m<sup>2</sup> 46세대

바. 구조 : 철근콘크리트 구조

사. 사업비 : 68,193,293천원

4. 주요변경사항 : 기계실,전기실,저수조의 기초 및 지하주차장  
일부의 기초를 파일기초에서 지내역기초로 변경

5. 변경승인일 : 2014년 3월 21일

6. 설계도서 : 승인설계도서와 같음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(건축과 ☎  
063-454-3712)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군산시 고시 제2014-32호

##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:345kV 군산~새만금 송전선로)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:345kV 군산~새만금 송전선로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 
관계도서는 군산시청(도시계획과)과 한국전력공사(전북건설지사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군 산 시 장  
2014년 3월 28일


1. 사업시행지 : 군산시 임피면, 대야면, 회현면, 옥구읍, 개사동, 신관동, 산북동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가.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 : 345kV 송전선로)
  - 나. 명 칭 : 345kV 군산~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
3. 사업의 면적 및 규모(변경없음)
  - 가. 면 적 : 695,222㎡
  - 나. 규 모 : L=30.39km (철탑 88기)
4.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(변경없음)
  - 가. 사업시행자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
  - 나. 사업시행자 성명 : 한국전력공사사장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  - 당초 : 2011. 1. ~ 2014. 03. 31.
  - 변경 : 2011. 1. ~ 2016. 02. 28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: 게재실음생략
7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군산시 고시 제2014-34호

### 도로명주소(부여·변경·폐지)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4. 1

군 산 시 

○ 도로명주소 부여 : 41건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별 도 열 람				

○ 도로명주소 변경 : 5건

지번주소	변경된 도로명주소	종전 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별 도 열 람					

○ 도로명주소 폐지 : 4건

지번주소	폐지된 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별 도 열 람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(☎454-398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군산시 고시 제2014 - 35호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
- 조촌택지(지구단위구역 및 계획) -

조촌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·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군 산 시 장

2014년 4 월 일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2	조촌택지개발 사업지구	조촌동 75-7번지 일원	183,164.1	-	183,164.1	위치 변경

2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

○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분	위치	면적(㎡)			최 결 정 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8	녹지	완충녹지	조촌동 909번지 일원	8,788.7	-	8,788.7	전북고7 (’94.1.11)	위치 변경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: 실음생략. 끝.